

제302회 임시회
기획경제위원회

정관 변경 보고

2021. 9. 6



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(안)

1. 변경사유

- 투자출연기관의 주요규정 현황점검 안내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7745, 2021.07.14.)에 따른 규정 정비
 - 이사회 의결을 요 하는 규정의 범위 명확히 정비
- 비상근이사(노동이사 포함)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해 ‘이사회 안건 제출권’ 및 이사회 관련 ‘정보열람권’ 반영

2. 주요내용

- 이사회 의결을 요 하는 규정의 범위 명확히 정비(안 제23조제5호)

현 행	개정(안)
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정	규정의 제정 및 개정

※ 현재 연구원의 모든 규정의 제·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음.

- 비상근이사(노동이사 포함)의 ‘이사회 안건 제출권’, ‘정보열람권’ 관련 내용 신설(안 제14조제3항)
 - 비상근이사는 이사회 소집 전 소관부서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이사회 안건과 관련한 정보열람을 소관부서에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신설

3. 부 칙

- 시 행 일 :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</p> <p>1~4. (생략)</p> <p>5. <u>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정</u></p> <p>6~10. (생략)</p> <p>제24조(이사회의 소집) 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23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</p> <p>1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규정의 제정 및 개정</u></p> <p>6~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이사회의 소집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비상근이사는 이사회 소집 전 소관부서에 안전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이사회 안전과 관련한 정보열람을 소관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